

# 석유류제품 가격조정

**상공자원부는** 지난1월1일 국내석유류제품 평균가격을 세전공장도 기준 9.12%, 소비자가격 기준으로 0.23% 인하 조정했다. 아울러 LNG는 가스공사 출고가격 기준으로 1.9%를 소폭인상 하였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석유류특별소비세율 인상에 따라 이를 전부 소비자가격에 반영할 경우 휘발유, 등·경유 및 가스가격의 대폭

적인 인상이 불가피하였으나(소비자 가격기준 평균 4.24% 인상요인 발생), 물가안정과 소비자보호라는 원칙하에 최근의 원유가격 하락분으로 그 인상요인을 대부분 흡수하여 소비자가격기준으로 오히려 평균 0.23% 인하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유가조정에 따른 주요유종의 세포함 소비자가격 변동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단위 : 원/ℓ, kg, m<sup>3</sup>)

	현 행	특소세반영		금번조정		특소세율 (%)
			%		%	
휘 발 유	610	718	17.70	620	1.64	109→150
등 유	254	278	10.24	254	0.0	0→10
경유(저유황)	214	233	8.88	218	1.87	9→20
B-C유(저유황)	102.26	좌동	-	102.26	0.0	
B-C유(고유황)	86.65	좌동	-	82.34	△4.97	
프 로 판	460	464	0.87	475	3.26	8→10
부 로 탄	304	308	1.44	304	0.0	8→10
평 균			4.24		△0.23	
L N G (가스공사출고)	173.33	186.70	7.7	176.59	1.9	0→10

이에 따라 물가에 미치는 영향도 특소세조정효과를 전부 소비자가격에 반영할 경우 생산자물가 0.41%P, 소비자물가 0.22%P 인상효과가 예상되었으나, 이번 조정으로 생산자물가는 0.03%P 인하효과가 발생하고, 다만 휘발유, 경유, LPG등 일반소비자용 유류가격의 소폭인상에 따라 소비자물가에는 0.03%P 인상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금년 1월 1일부터 국내 주요 석유류

가격에 대한 연동제를 실시키로 하였다. 이러한 유가 연동제에 따라 휘발유, 등유, 경유 및 B-C유 가격은 국제원유가 및 환율의 변동에 따라 매월 1회씩 그때 그때 조정될 것으로 예상되어 올해부터 우리소비자들도 다른 나라 소비자와 같이 주유소에서 매달 변동하는 가격으로 석유제품을 구입하게 된다. (단, LPG는 서민 생활의 주연료일 뿐만 아니라 대부분을 제품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당분간 연동제대상에서 제외)

석유류제품 최고판매가격 조정내역

(단위 : 원/ℓ, 원/kg)

유종	세전공장도가격			세후공장도가격			최종소비자가격		
	현행	조정	조정율	현행	조정	조정율	현행	조정	조정율
휘발유	240.41	203.64	-15.29	552.70	560.00	1.32	610.00	620.00	1.64
등유	202.83	181.82	-10.36	223.11	220.00	-1.39	254.00	254.00	0.00
경유 (0.2%)	155.02	141.67	-8.61	185.87	187.00	0.61	214.00	218.00	1.87
경유 (1.0%)	151.70	137.12	-9.16	181.89	181.00	-0.49	210.00	212.00	0.95
B-C유 (1.0%)	84.05	84.05	0.00	92.46	92.46	0.00	102.26	102.26	0.00
B-C유 (1.6%)	84.05	80.61	-4.09	92.46	88.67	-4.10	102.26	98.47	-3.71
B-C유 (4.0%)	70.77	66.85	-5.54	77.84	73.54	-5.53	86.65	82.34	-4.97
프로판 (일반용)	198.67	190.66	-4.03	236.01	230.70	-2.25	460.00	475.00	3.26
프로판 (도시가스용)	156.57	153.63	-1.88	185.89	185.89	0.00			
부탄	198.18	190.18	-4.04	235.43	230.12	-2.26	304.00	304.00	0.00
평균 조정율			-9.12%			-3.15%			-0.23%
물가영향 (%P)			-			-0.033			0.029

유가연동제의 구체적인 시행은 정부가 추후 고시할 연동제 방식에 따라 이뤄지게 되며, 이러한 정부 발표에 따라 국내 석유가격이 최초로 변동을 개시하게 되는 것은 오는 2월 15일 부터로 예상되고 있다.

유가연동제는 우리경제의 국제화, 개방화를 앞두고

민간업체가 공급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가격을 결정하는 유가전면자유화의 사전 준비단계로 시행하게 되는 것이며, 이에 따라 정부는 지금까지의 석유가격에 대한 사전적·직접적 통제에서 벗어나 점진적으로 그 개입 범위를 최소화해 나갈 것으로 밝히고 있다. ♪

에너지는 알뜰하게 절약은 꾸준하게